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의자 : 소병훈 · 김교홍 · 박정
박희승 · 민형배 · 이인영
허영 · 윤준병 · 이개호
서삼석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시 · 도 및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다음 각 호”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② · ③ (생 략)	<p><u>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